

의안번호	2201157
의 퇴 인	김용민 의원
회 답 일	2024. 7. 11.
추계번호	24B1430
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□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사용되는 전기이륜자동차 구매비용 보조금을 확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1억 2,000만원(연평균 2억 2,400만원)으로 추계됨

- 국 비: 향후 5년간 5억 6,000만원(연평균 1억 1,200만원)
- 지방비: 향후 5년간 5억 6,000만원(연평균 1억 1,200만원)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대, 백만원)

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사업용 전기이륜자동차 보조금 추가지급 (안 제23조제5호의2 신설)	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지원대상(a)		1,400	1,400	1,400	1,400	1,400	7,000	1,400
지원단가(b)		0.16	0.16	0.16	0.16	0.16	—	0.16
추가재정소요(axb)		224	224	224	224	224	1,120	224
	국비	112	112	112	112	112	560	112
	지방비	112	112	112	112	112	560	112

주: 1. 최근 3년 환경부의 무공해차 보급사업 실적 및 목표치를 바탕으로 추계기간 중 매년 소화물배송대행 전기이륜자동차 1,400대에 대해 16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소화물배송대행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현황 및 지원 단가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2.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
3.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3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) 제5호의2 신설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5의2.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¹⁾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이륜자동차의 구매, 이용 및 교체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23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) 제5호의2 신설	○	환경부의 무공해차 보급사업을 참고하여 추계

- 1)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2. "환경친화적 자동차"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, 태양광자동차, 하이브리드자동차,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.
- 가.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
- 나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
- 다.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사용되는 전기이륜자동차를 구매, 이용 및 교체 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 - 환경부는 “무공해차 보급사업²⁾”을 통하여 전기이륜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 지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, 이 중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(배달차량)도 포함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평균 464대로 전체 비중은 평균 3.5% 수준
 - 대당 지원단가: 예산상 160만원(2024년 기준)

[표 2] 무공해차 보급사업(전기이륜자동차) 예산현황

(단위: 대, 억원)

		2021	2022	2023	합 계	평균
전기이륜자동차 등록대수	신규	18,949	16,568	9,435	44,952	14,984
	누적	50,069	63,091	72,526	-	-
전기이륜자동차 보급대수	전체(a)	16,858	14,892	8,182	39,932	13,310
	배달차량(b)	843	501	47	1,391	464
		5.0%	3.4%	0.6%	3.5%	3.5%
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액(국비)		211	160	75	446	149

자료: 환경부

-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본 추계에서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용 전기이륜자동차를 구매하거나 교체하는 경우,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는 것으로 가정함
 - 환경부에 따르면 2023년까지 전기이륜자동차는 72,526대 보급, 2024년

2)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전기차보급, 수소차보급, 무공해차 운영비 등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최근 3년간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

(단위: 백만원)

	2022	2023	2024	합 계
전기자동차 보급	1,719,000	1,918,000	1,734,000	5,371,000
수소차 보급	679,505	633,400	571,350	1,884,255
무공해차 운영비	9,256	13,824	13,904	36,984
합계	2,407,761	2,740,224	2,319,254	7,467,239

자료: 환경부

4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어 목표치가 달성되는 경우 112,526대 보급 예정(2024년)

- 개정안에 따른 지원물량은 2024년 이후에도 전기이륜자동차가 4만대씩 보급되는 것으로 가정할 때 소화물배송업서비스사업용 전기이륜자동차는 최근 3년간 전체 전기이륜자동차 보급물량의 평균 3.5%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

□ 보조금 지급단가는 현행 환경부 예산상 보조금단가의 10%로 가정함

- 현행 전기이륜자동차 보조금 단가는 예산상 평균 160만원(국비와 지방비의 합계)으로 차량의 종류마다 실지급액은 상이함³⁾
-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최종 산정된 보조금의 일정비율(최소 자부담금)을 반드시 부담(해당 전기이륜차를 판매하는 제작·수입사에 지불)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2023년부터 배달 등 생계형 전기이륜자동차 구매자에게 추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음
 - 2023년부터 환경부는 배달 등 생계형⁴⁾ 소상공인, 취약계층에 추가 10%(국비)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(2023년 환경부 전기이륜자동차 구매보조금 업무처리지침)
 - ※ (2024년 지침) 배달 사용 목적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추가 10%, 소상공인, 취약계층, 농업인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추가 20% 지원
 -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최종 산정된 보조금(국비+지방비)의 일정비율을 반드시 부담(해당 전기이륜차를 판매하는 제작·수입사에 지불)해야 하며,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은 해당 전기이륜차 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
- 이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용 전기이륜차 구매자에 대한 추가 보조금은 현행 예산단가(160만원)의 10% 수준(예산상 단가 16만원)으로 가정함(국비와 지방비: 5:5)

□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

3)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: 경형 140만원부터 대형 300만원까지

구분	유형별	일반형				기타형
	규모별	경형	소형	중형	대형	
최대지원액(만원)		140	230	270	300	270

자료: 환경부

4) 환경부 보도자료 “충전불편 없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에 박차”, 2023. 3. 28.

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사용되는 전기이륜자동차 구매 등 지원(안 제23조제5호의2 신설)

- **(지원대상)** 소화물배송대행 전기이륜자동차 보급물량은 전체 전기이륜자동차 보급물량의 평균 비중 수준(3.5%)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
 - 환경부에 따르면 2023년까지 전기이륜자동차는 72,526대 보급, 2024년 4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어 목표치가 달성되는 경우 112,526대 보급 예정(2024년)
 - 2025년 이후에도 전기이륜자동차가 4만대씩 보급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, 소화물배송업 물량은 최근 3년간 전체 전기이륜자동차 보급물량의 평균보급률 3.5%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
 -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용 전기이륜자동차가 전체 전기이륜자동차의 3.5% 수준으로 매년 보급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추계기간 동안 매년 1,400대가 보급될 것으로 예상됨($40,000\text{대} \times 3.5\% = 1,400\text{대}$)
- **(지원단가)** 개정안에 따른 전기이륜자동차 추가 보조금은 현행 예산상 단가의 10%인 16만원으로 가정함
 - 현행 전기이륜자동차 보조금은 예산상 평균 160만원(2024년 기준)
 -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최종 산정된 보조금(국비+지방비)의 일정비율(최소 자부담금⁵⁾)을 반드시 부담(해당 전기이륜차를 판매하는 제작·수입사에 지불)해야 하며,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은 해당 전기이륜차 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
- **(추계결과)** 개정안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용 전기이륜자동차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추가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1억 2,000만원(연평균 2억 2,400만원)으로 추계됨
 - 국비: 향후 5년간 5억 6,000만원(연평균 1억 1,200만원)
 - 지방비: 향후 5년간 5억 6,000만원(연평균 1억 1,200만원)

5) 최소 자부담금 = 보조금(국비+지방비) × 일정비율(일반경형, 기타형경형: 50% / 소·중형, 기타형 소형: 45% / 대형, 기타형(화물): 40%), 환경부, 「2024년 전기이륜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」

[표 6] 소화물배송대행 전기이륜자동차 구매보조금 추가 지급에 따른 재정소요: 2025~2029년
(단위: 대,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지원대상(a)	1,400	1,400	1,400	1,400	1,400	7,000	1,400
지원단가(b)	0.16	0.16	0.16	0.16	0.16	-	0.16
추가재정소요(axb)	224	224	224	224	224	1,120	224
국비	112	112	112	112	112	560	112
지방비	112	112	112	112	112	560	112

주: 1. 최근 3년 환경부의 무공해차 보급사업 실적 및 목표치를 바탕으로 추계기간 중 매년 소화물배송대행 전기이륜자동차 1,400대에 대해 16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소화물배송대행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현황 및 지원 단가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2.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3.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최근 3년 환경부의 무공해차 보급사업 실적 및 목표치를 바탕으로 추계기간 중 매년 소화물배송대행 전기이륜자동차 1,400대에 대해 16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소화물배송대행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현황 및 지원 단가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박인재	이유미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인재	02-6788-4650	powerreset@assembly.go.kr